

서울특별시 서초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(안)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41호)

1996. 3. 7

총무재무위원회
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96. 1. 29.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 일자 : 96. 2. 3.
- 다. 상정 일자 : 96. 3. 7.
- 라. 개회회수 및 일수 : 제51회 임시회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제2차회의 상정.
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국장 이상하)

가. 제정이유

-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시설기준 (안 제4조)

- 대지 1,000㎡ 이상 (계절시장 : 300㎡ 이상)
- 급수·배수·위생시설 (계절시장은 제외)

- 계절시장 개설자의 자격 (안 제5조)

-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자
-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
-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- 시장개설자의 책무 (안 제7조)

-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
-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

-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
-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
-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
-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

다. 참고사항

- 1) 관련근거 :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 제2항
- 2)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3) 협 의 : 해당없음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임충빈)

가. 검토내용

-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과 계절시장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안 있.

나. 검토결과

-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- 계절시장의 경우 도로부지에 있어서 간선도로에서 50m이상 떨어진 지선 (안 제4조제3항제3호) 및 시장의 입주자로 부터 시설유지 관리비 징수를 규칙으로 구체화 하는 것은 많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(안 제8조)

다. 관련법규

- 1) 도·소매업진흥법 (都·小賣業 振興法 : '95. 1. 5 전문개정)

제2조 (정의)

- 시장(市場) : 일정구역안의 건물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·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것.
- 정기시장(定期市場) :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

제16조 (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)

- ① 정기시장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이 이를 개설한다. 다만,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개설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·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관내에 정기시장의 유무 → 현재 없음
- 안제6조에서 구청장이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이 많은 것 아닌가 → 95.11.13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계절시장인 김장시장의 개설때만 해당되며 취소 사유는 극히 적을 것임.
- 안제7조 제1항 제2호의 "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"에서 "근대화"의 개념은 무엇이며 "현대화"로 바꿀 용의는 → 근대화는 현대화에 가깝고 현대화는 더 개량되고 발전된 것으로 현대화란 용어가 바람직하다고 봄.
- 서초구에는 시장이 몇개소나 있는가 → 일반시장 29개소, 대형판매소 2개소, 백화점 2 등 34개소의 시장이 있음
- 안제4조의 시설기준에 대지 1,000㎡ 이상인데 이는 너무 강제성이 아닌가 문민 시대에 맞게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→ 다중 이용시설이므로 최소한의 시설기준이 필요하다고 봄.
- 기존시장도 정기시장의 계절시장의 허가사항인가 → 아님
- 풍물시장은 허가사항인가 → 정기시장에 해당안됨, 김장시장 뿐이다
- 서초구는 정기시장의 개설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→ 계절시장이 있음
- 계절시장인 김장시장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→ 쓰레기 예치금 제도를 활용함.
- 시장에는 점포의 권리금이 과다하여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→ 분양가를 기준, 적절히 행정지도 하겠음.

- 시장의 지도감독은 안 제7조의 책무에 대해 → 구체적 명시보다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음.
- 계절시장에는 위생설비등 편의시설이 없는데 → 단 기간 운용하므로 필요치 않음.
- 개발제한구역내의 시장설치는 → 불가함
- 반포3동 고속버스터미널앞 지하상가에서 농수산물직거래 장터가 있는데 → 도로이면 도로법 위반임.
- 시장 관리인의 지정취소의 기준이 막연하다고 보는데 → 구청장이 개설하며 시장 관리인이 성실히 운영하지 못할때 지정 취소함.
- 안 제8조에 관리비등의 징수는 → 관리인 또는 지정받은자가 징수하며 시행규칙에 반영 하겠음.
- 징수금의 세입조치는 → 필요경비만 징수하여 그 유지관리에 사용 할 것임.
- 정기시장은 필요치 않다면 계절시장은 → 계절시장은 필요함
- 본 조례의 제정필요성은 → 제정이 필요함.
-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제정의 불가피성이라도 있는가 → 규제와 통제는 적절히 되면 좋다고 봄. 다수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기준설정은 바람직하다고 봄.
- 안제5조 제2항 제5호에 개설자가 직접운영치 않을 때 취소한다는 내용도 추가 활용의는 → 운영의 묘를 기하겠음.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안제5조 제2항 제5호에 "개설자가 직접운영하지 않을 때" 라고 추가하는 수정동의안 발의 → 재청 없음.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

원안가결 (만장일치)

자구수정, 체계정리등은 위원장에게 위임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체계자구 정리내용

안제7조 제1항 제2호

"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" 를

"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현대화"로